

「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일자 2026. . .

제안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8조를 삭제한다.

「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함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7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<u>장애인복지 관 및 장애인체육시 설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 다</u> 인정하는 경우 「사 회 복 지 사 업 법」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	제7조(위탁운영) ① - ---- <u>장애인복지시 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7조(위탁운영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② ~ ④ (개정안과 같음)

제8조(위원회) <u>장애</u> <u>인복지관 및 장애인</u> <u>체육시설의 수탁자</u> 선정을 위한 위원회 는 「구미시 장애인 <u>복지위원회 운영 조</u> <u>례</u> 」에 따른 장애인 <u>복지위원회로 대체</u> <u>한다.</u>	제8조(위원회) <u>장애</u> <u>인복지시설</u> ----- ----- ----- 「구미시 사무위탁 <u>조례</u> 」----- ----- <u>민간위탁</u> <u>선정 심의위원회로</u> <u>한다.</u>	<삭 제>
제10조(위탁협약의 해 지) ① (생 략) ② 위탁협약이 해지 된 경우 시설에서 사용하던 부대시 설, 장비 및 비품은 <u>신</u> 에 귀속된다.	제10조(위탁협약의 해 지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미시</u> <u>(이하 “시” 라 한</u> <u>다)</u> ----- -.	제10조(위탁협약의 해 지) ① (개정안과 같 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
제11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<u>장애인복지관</u> <u>및 장애인체육시설</u> 에 대하여 지도·감 독을 실시하여야 하 며, 필요하다고 인	제11조(지도·감독) ① ----- <u>장애인복지시설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	제11조(지도·감독) ① (개정안과 같음)

정하는 경우에는 수 시로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 음)	②·③ (개정안과 같 음)
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